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/ 식품의약품안전처	보 도 자 료	배 포	2021. 4. 7(수)
		담 당 과	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
		과 장	오영진 (☎043-719-2252)
		사 무 관	김현정 (☎043-719-2255)

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 강화

- 「어린이식생활법」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-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(이하 센터)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「**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**을 **4월 7일 입법예고**합니다.

○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이 개정·공포('20.12.29)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, 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▲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 범위 명확화 ▲센터 등록(신규·변경·종료) 절차 등 신설 ▲'다함께돌봄센터'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입니다.

○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**소규모 급식소***를 **센터등록 대상 급식소**로 **의무화**하여 위생·영양지원을 강화합니다.

* ▲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·사립유치원
▲상시 1회 급식인원 50인 미만인 청소년시설, 아동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

○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**신규·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**하고, 식약처가 센터의 **등록관리를 지도·점검**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.

OPEN 공공누리
마스크·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02-2640-5080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○ 또한 센터의 지원대상에 **‘다함께돌봄센터*’**를 **포함**하여,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**확대**합니다.

* 초등 정규교육 이외 시간동안 돌봄서비스(급식포함) 제공기관으로 ’20년 기준 전국 424개소가 설치·운영 중

□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,

○ 앞으로도 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○ 참고로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(www.mfds.go.kr → 법령·자료 → 입법·행정예고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붙임 : 주요 개정안 세부 내용

OPEN
마스크·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02-2640-5080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<붙임> 주요 개정안 세부내용

구분	주요 내용
법률 개정 ('20.12.29) 위임사항 규정	① 시행규칙 **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의무 등록 급식소의 범위 규정** * (현행) 관련 규정 없음 → (개정) 100인 미만 어린이집·사립유치원, 상시 급식인원 50인 미만 기타 어린이 급식소
	② 시행규칙 **센터 등록(신규·변경 등) 절차·방법 신설 및 식약처장이 등록 관리 적절성을 지도·점검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** * (현행) 관련 규정 없음
	③ 시행령 **센터 미등록 급식소,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** * (현행) 관련 규정 없음 → (개정) (1차)300만원, (2차)600만원, (3차)900만원 부과
지원 강화 등	④ 시행령 **센터 지원대상에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추가** * (현행)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, 청소년시설, 아동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(어린이50%이상) → (개선) 현행+다함께돌봄센터
	⑤ 시행령 **센터 지원 세부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** * (현행) 관련 규정 없음 → (개선) 식약처장이 정한 안전 및 영양관리 기준에 따라 급식소 지원

OPEN 공공누리
마스크·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02-2640-5080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